

제규정관리규정

제정 2002. 6.
 개정 2012. 3. 1.
 개정 2016. 3. 1.
 개정 2016. 9. 19.
 개정 2017. 3. 1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제규정의 제정, 개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교에서 시행하는 제규정의 제정, 개폐 및 운용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①이 규정에서 제규정이라 함은 법령 및 정관에 준거하여 본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정, 시행세칙, 내규 등을 비롯한 모든 성문규범을 말한다.

②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방침 및 기준을 정한 체계적인 성문규범을 말한다.

③시행세칙이라 함은 학칙 및 규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성문규범을 말한다.

④내규라 함은 외부에 공시함이 없이 사무처리의 부분적인 기준을 정한 체계적인 규범형식을 갖춘 문서를 말한다.

제2장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

제4조(제정권자)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는 총장이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본교의 직제에 관한 기본규정
2. 교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
3. 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기본규정

제5조(효력) ①제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부터 발생한다.

②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
③상위규정의 효력은 하위규정에 우선한다.

④현행규정이 신규정에 저촉될 때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은 신규정에 따른다.

제6조(입안) ①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입안은 업무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

획업무 담당부서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②제규정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상관될 경우는 그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③기획업무 담당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소관 부서에 규정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입안 규정의 처리) ①기획업무 담당부서는 제3조 제2항의 입안된 규정에 대하여는 검토 후 교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해 심의를 거친 규정과 시행세칙 및 내규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 단, 해당 규정의 제개정 및 폐기에 관한 심의 권한이 부여된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.

제8조(제정형식) ①제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총칙 : 규정의 목적, 적용범위, 용어정의 등 총괄적인 사항

2. 본칙 : 기본사항 또는 지침, 절차 등의 본 내용

3. 부칙 : 시행일,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, 기존규정과의 관계, 규정의 개폐절차, 효력기간(한시규정의 경우) 등

②제규정의 항목구분은 장, 절, 조, 항 및 호의 순으로 한다. 다만,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게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에는 조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.

③규정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.

1. 항의 표시 : ①, ②, ③, . . .

2. 호의 표시 : 1, 2, 3, . . .

3. 호 다음은 : 가, 나, 다, . . .

ㄱ, ㄴ, ㄷ, . . .

④부칙규정은 ①, ②, ③, . . .으로 표시하되 그 규정조항이 1개일 때에는 번호를 생략한다.

제9조(소관규정 검토 및 개정요청) 각 부서는 소관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그 유효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획업무 담당부서에 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3장 제규정 관리

제10조(주관부서 및 관리) 제규정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업무 담당부서에서 관장하며 제정된 규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규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

제11조(규정집) ①제규정의 원본은 기획업무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규정집을 편집·발간하여 배부한다.

②배부된 규정집은 관리부서에서 보관하고 제정 또는 폐된 제규정은 즉시 가제관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(유권해석) 제규정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유권해석에 따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6월 일부부터 시행한다.
- ②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④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- ⑤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제규정 입안 및 심의 요청서

기본정보	규정명	
	소관부서	
	형식	규정(), 규칙(), 지침(), 시행세칙() * 규정과 시행세칙이 동시에 개정 또는 제정되는 경우 한 번에 작성
	구분	개정(), 제정(), 폐지()
추진배경		
주요내용	가. 나. 다.	
붙임	가. 신 규정 나. 신·구 대조표	

제출일 : 20 . . .

부서장 : (인)

(별지 제2호 서식)

규 정 대 장						
일련번호	규정번호	소관부서	규정명	제정일	개정일	비 고